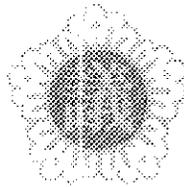


제225회 임시회
2004. 4. 2. (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4. 2.(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3. 30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 취득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제8조)
-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지하는 도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 다.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제24조, 제48조, 제67조, 제78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07013호)으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적용하고,

취득세의 신고기한 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50%를 경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2003.12.31, 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30만원 미만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를 보통우편방법에 의할 경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 취득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제8조)
-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도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 다.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제24조, 제48조, 제67조, 제78조).

의안전문 : 따로 불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불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불임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신고납부 등)”을“(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9항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제48조의 제목“(신고납부)”를“(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8조의 제목“(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생략)</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도세담당국장이 되 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 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 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7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p> <p>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p> <p>①----- -----신고하고 납부----- -----신고하고 납부-----</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항·제4항(신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제1항 - 단서신설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

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 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중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 - 신설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법 제146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 매 1건당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제259조(징수방법과 납기) 제2항·제3항

②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1항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 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기본우편역무의 종류)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우편물송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빠른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배달하는 우편물
2. 보통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

②제1항 각호의 우편물송달기준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상표법 제86조의30(상표원부예의 등록의 특례)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